



【특허침해판정 지침서(2017)】

- 중국 북경시 고급인민 법원 공개



2017년 4월 27일

한글 번역판은 개인의 번역에 의해 제공됨

목차

I. 발명 또는 실용 신안의 보호 범위 결정.....	2
(I) 보호 범위 결정을위한 해석 원칙.....	2
(II) 해석 대상.....	3
(III) 해석 방법.....	5
II 발명 및 실용 신안에 대한 특허권 침해 판정.....	13
(I) 기술특징의 비교 원칙 및 방법.....	13
(II) 동일 침해.....	14
(III) 동등한 침해.....	15
III. 디자인 특허 보호 범위의 결정.....	21
IV. 디자인 특허 침해 결정.....	23
V. 특허 침해 행위의 판정.....	31
(I) 직접적인 특허 침해 행위의 결정.....	31
(II) 공동 특허 침해 행위의 결정.....	36
VI. 특허 침해 항변.....	37
(I) 특허의 유효성에 근거한 항변.....	38
(II) 특허권 남용에 근거한 항변.....	38
(III) 비 침해에 근거한 항변.....	39
(IV)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 항변.....	40
(V) 종래기술 항변 및 종래 디자인 항변.....	43
(VI) 합법적인 원천에 근거한 항변.....	45
(VII) 침해 정지를 이행하지 않는 항변.....	45

-참고용-

I. 발명 또는 실용 신안의 보호 범위 결정

(I) 보호 범위 결정을 위한 해석 원칙

1. 특허 유효성 원칙. 권리 보유자가 주장하는 특허 무효 선언이 선포 될 때까지 그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며, 특허가 다음 조건에 따라 특허 부여와 관련된 조건을 준수하지않는다는 이유로 판결이나 판결이 내려지지 아니한다. 특허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지침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무효로 선언됩니다.

특허 등록부의 사본 또는 소송이 제기 된 연도의 연간 특허 수수료 수령과 함께 특허증서가 특허의 유효성을 입증 할 수 있습니다.

2. 공정성 원칙. 청구 범위를 해석 할 때 특허 청구 범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권리 보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종래기술에 대한 특허의 기여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대중의 주장과 신뢰의 이익 및 보호 받고있는 내용은 청구 범위의 보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특허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특허에 의해 극복되어야 할 기술적 인 결함을 포함 하는 기술적 해결책;
- (2) 전체적으로 종래기술에 속하는 기술 솔루션.

3. 절충주의 원칙. 청구 범위는 여기에 포함 된 기술적 내용에 기초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특허의 보호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은 설명 및 도면, 종래기술, 종래기술에 대한 특허의 기여 등을 포함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특허의 보호 범위는 청구 범위의 문자 적 의미에 국한되지

-참고용-

않으며, 당해 기술 이전의 설명과 도면을 읽은 후에 예술적으로 일상적으로 죽이는 사람이 창의적 노동을 통해서만 상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확대되어서는 안된다 특허 신청서 작성

4. 발명의 목적을 준수하는 원칙. 특허의 보호 범위의 결정에 있어서, 본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실현할 수 없는 기술적 해결책은 특허 청구 범위의 보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되며, 기술의 일반적인 내용을 읽은 후에도 배경 기술에 기초하여 특허의 기술적 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특허의 기술적 효과를 실현할 수 없으므로 예술적으로 평범한 사람이 결정한 기술적 해결책 도면은 특허의 보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II) 해석 대상

5. 발명 또는 실용 신안에 대한 특허 침해에 관한 분쟁의 재판에서, 우선 특허의 보호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발명 또는 실용 신안에 대한 특허의 보호 범위는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특징에 의해 정의 된 내용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기술 된 기능과 동등한 기술적 특징에 의해 정의 된 내용을 포함한다.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결정할 때 권리 보유자가 주장하는 관련 클레임을 올바른 근거로 해석해야 하며 클레임의 기술적 특징이 분할 되어야한다.

6. 권리 보유자는 클레임 집합에 2 개 이상의 클레임이 있는 경우 특정 클레임을 클레임에 명시해야 합니다. 클레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불만 사항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경우, 권리자는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설명 후에 법원의 논의가 끝나 기전에 권리자가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참고용-

법원은 소송을 기각 할 수 있습니다.

7. 권리 보유자가 종속 청구항에 근거하여 보호 범위를 결정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특허의 보호 범위는 이 종속 청구항에 명시된 추가 기술적 특징 및 청구항에 기술 된 기술적 특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종속 청구항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조됩니다.

8. 기술적 특징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으로 특정 기술 기능을 수행하고 상대적으로 독립적 인 기술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청구에 정의 된 기술적 솔루션의 최소 기술 단위를 말합니다. 제품과 관련된 기술 솔루션에서 기술 유닛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구성 요소 및/ 또는 제품 구성 요소 간의 연결 관계를 나타냅니다. 프로세스와 관련된 기술적 솔루션에서, 기술적 단위는 일반적으로 공정 단계 (들) 또는 단계들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

9. 권리 보유자에 의해 주장 된 청구가 특허 재심위원회 (PRB)에 의해 무효로 선언되고 권리 보유자가 혐의 주장을 시의 적절하게 변경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소송을 기각 할 수 있습니다.

무효화 된 청구에 따라 권리자가 제기 한 구속력 있는 행정 심판을 통해 상기 청구를 무효로 선언하려는 PRB의 결정이 철회되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권리자는 상기 청구를 근거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권리 소유자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조치의 기한은 행정 판결 일로부터 계산됩니다. 행정 처분 중 기소된 행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권리자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 할 때 관련 권리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

10. 해당 당사자가 제 2 심 법원에 제 1 심판 판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제 1 심판판결의 근거가 되는 청구가 최종 판결 전에 PRB에 의해 무효라고 판결된 경우, - 무효심판은 일반적으로 무효 청구에 근거하여 특허 소지인이 제기 한 소송을 기각하기 위해 취소됩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 하에서 법원은 기록상의 증거, 증거의 증거, 증거의 증거를 얻은 후에 관련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두 번째 사례의 재판을 중지 할 수 있다. 소송중인 특허의 기술적 난이도와 피고의 변호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

법원은 구속력 있는 행정 판결로 PRB가 청구를 무효로 선언 한 결정이 취소되었고 권리 소유자가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법원은 최초의 첫번째 판결에서 밝혀진 사실과 증거를 참조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의 판결.

(III) 해석 방법

11. 특허의 보호 범위의 결정은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에 의해 발표되고 하여 된 특허버전의 청구에 근거해야 하며, 또는 특허권의 확인에 대한 무효 심판 청구 및 관련 행정 심판에 대한 법적 효력 있는 결정에 의해 결정된 청구권. 클레임이 두 가지 버전 이상인 경우 궁극적 인 유효한 버전이 우선합니다.

12. 청구 범위는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관점에서 해석 되어야한다.

예술에 대한 통상적 인 기술을 가진 사람은 모든 공통 기술 지식을 인식하고 출원일 이전에 예술에 존재하는 모든 기술에 접근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적용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가상의 "사람"이다 일상적인 시험은 출원일 이전에

-참고용-

의미한다.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는 특별히 한 사람 또는 한 유형의 사람을 언급하지 않으며, 교육 배경, 전문 직책 및 순위와 같은 특정 기준을 참조하여 표시할 수 없습니다. 당해 기술 분야의 통상적인 기술자가 통상적인 기술적 지식을 인지하고 특정의 통상적인 실험적 수단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당사자로부터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증거가 제공되어야 한다.

13. 클레임에 대한 해석, 구체 및 수정을 포함하여 클레임에 대한 해석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즉, 클레임에 기술 특징이 명확한 기술을 전달하지 못할 때 클레임에서 기술적 특징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 내용; 이해 측면에서 기술적 특징에 결함이 있을 때 청구항의 기술적 특징의 부족을 교정하는 것; 기술적인 특징들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는 경우와 같은 특정한 경우에 청구에서 기술적인 특징의 의미를 수정하는 것.

14. 청구 범위에 명시된 모든 기술적 특징에 의해 전달되는 기술적 내용은 일반적으로 전체 기술적 솔루션으로 취급됩니다. 독립적 클레임의 전척부분과 특징부분, 종속 항의 인용부분 및 제한부분의 기술적 특징은 보호 범위를 정의해야 한다.

청구항이 둘 이상의 병렬 기술 솔루션을 포함하는 경우 각 병렬 기술 솔루션은 전체기술 솔루션으로 별도로 결정됩니다.

15. 청구 범위를 해석 할 목적으로, 특허의 설명 및 도면에 제시된 내용을 참조 할 수 있으며, 특허와의 분할 관계가 있는 다른 특허 및 상기 특허의 부여

-참고용-

및 확인 (무효 및 항소) 절차 중에 특허 심사 서류 및 효과적인 법률 문서에 열거 된 내용

상기의 수단에 의거하여 청구항의 의미를 명확하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고 문헌, 교과서 등의 공공 문헌을 참고하여 통상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특허 심사 서류는 특허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제출 한 서면 자료, 사무 조치, 인터뷰기록, 구두 진행 기록,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 및 PRB가 심사, 재심사 및 무효화 절차에 관해 발행 한 재심사 및 무효화에 대한 효과적인 결정.

16. 특허법 제 26.3 조 및 제 4 조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여 특허 내용의 불일치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을 해석 할 수 없으므로 당해 당사자는 특허 무효화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통보 받습니다. 당사자가 이에 따라 특허 무효화 절차를 개시하고 현재의 소송 재판을 정지하기로 신청 한 경우 법원은 소송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가 특허 무효화 절차를 통해 분쟁 해결을 명백히 거부하는 경우 또는 특허유효성 원칙에 따라 합당한 기한 내에 특허 무효화 요청을 하지 못한 경우 보호 범위는 문자 적 의미에 따라 결정됩니다 청구의 청구 범위 및 설명 및 도면을 읽음으로써 당해 기술 분야의 통상적 인 사상자를 가진 자는 보호를 위해 청구 된 기술적 특징의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독창적 인 해석을 달성 할 수 있다면 청구항에서 허위 진술이 명확해 지거나 이 해석에 기초하여 개정 됨.

특허의 보호 범위가 전 단락에 따라 결정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참고용-

17. 청구 범위를 해석하고 청구 범위에 나열된 청구 범위의 보호 범위를 결정할 때, 독립 청구항의 보호 범위가 종속 청구 범위의 보호 범위와 다르다고 가정 할 수 있습니다. 독립 청구항의 보호 범위는 종속 청구항의 보호 범위보다 크며, 선행 종속 항의 보호 범위는 당해 기술 분야의 통상적 인 사상자를 획득 할 수 없는 한, 이전의 종속 청구항의 보호 범위가 후속 청구항의 종속 범위보다 크다. 특허의 설명과 도면 및 특허심사 서류와 같은 내부 증거에 따른 청구항의 반대 해석.

18. 기능 또는 효과의 관점에서 표현되는 청구항의 기능적 기술적 특징과 관련하여, 이 기술 특징의 내용은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및 그 균등 물에 개시된 기능 또는 효과를 달성하기위한 특정 모드를 참조하여 결정 되어야한다.

기능적 기술적 특징이란 구조, 구성, 재료, 단계, 조건 또는 이들이 수행하는 기능 또는 발명의 창출에서 달성 한 효과에 의해 그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는 청구항의 기술적 특징을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기능적 기술적 특징으로 식별되어서는 안된다.

(1) 기능이나 효과의 관점에서 설명되고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 잘 알려진 기술 용어가 된 기술적 특징, 또는 기능 또는 효과의 관점에서 설명되고 기능 또는 효과를 달성하기위한 특정 모드가 청구항을 읽음으로써 직접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결정될 수 있는 것;

(2) 기능이나 효과의 관점에서 설명되고 구조, 구성, 재료, 단계, 조건 등의 측면에서 설명되는 기술적 특징

19. 기능적 기술적 특징의 내용을 결정할 때, 기능적 기술적 특징은 상기

-참고용-

기능 및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설명 및 도면에 개시된 구조 및 단계의 대응하는 특징으로 정의된다.

20. 특허의 공정 청구가 명백히 일련의 단계를 정의하는 경우, 단계 그 자체와 단계의 순서는 특허의 보호 범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허의 공정 주장이 일련의 단계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이것은 일련의 단계가 청구항에 미치는 최종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핑계가 되지 못한다. 그 단계는 명세서 및 도면, 청구 범위에 제시된 기술적 해결책, 단계들과 특허 심사 서류들 간의 논리 관계를 참조함으로써 당업자의 관점에서 특정한 순서로 수행 되어야한다.

21. 준비 방법에 의해 제품을 정의하는 기술적 특징은 특허의 보호 범위를 한정하는 기능을 한다. 고소 된 제품의 준비 방법이 특허 방법과 동일하거나 동등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기소된 기술 해결책이 특허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결정해야한다.

22. 실용 신안에 대한 특허 청구가 비 구조적이고 비 구조적인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는 경우, 기술적 특징은 특허의 보호 범위를 한정하는 역할을 한다.

형상이 아닌 비 구조적 기술적 특징이란 실용 신안에 대한 특허 청구 범위에 기술 된 기술 특성을 말하며, 용도, 제조 과정, 방식과 같은 형태, 구조 또는 그 조합에 속하지않는다 구성 성분 (성분 함량, 비중) 등

23. 제품 발명 또는 실용 신안에 대한 특허 청구가 적용 분야 또는 용도를 정의하지않는 경우, 적용 분야 또는 사용 분야는 일반적으로 특허의 보호 범위를 한정 짓지 않는다.

-참고용-

24. 클레임 기능에 통합된 사용 환경 기능은 특허의 보호 범위를 제한합니다. 기소된 기술 솔루션이 청구 범위에 기술된 사용 환경 하에서 적용 가능한 경우, 기소된 기술 솔루션은 특허 청구 범위에 기술된 사용 환경 특징을 소유하고 있음이 결정되어야 한다. 기소된 기술 솔루션에서 환경 기능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특허 문서가 기술 솔루션이 단지 사용 환경 하에서만 적용 가능하고 혐의 기술 솔루션이 다른 사용 환경 하에서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경우, 기소된 기술 솔루션은 특허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혐의된 기술 솔루션이 청구 범위의 사용 환경 특징에 의해 정의된 사용 환경 하에서 적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 혐의된 기술 솔루션이 특허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주제와 달리, 사용 환경 기능은 발명 또는 실용 신안이 적용되고 기술적 솔루션과 관련되거나 협력되는 배경 또는 조건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청구항의 기술적 특징을 의미합니다.

25. 적용 분야, 용도 또는 구조와 같은 주제에 포함된 기술적 내용이 청구항에 의해 보호되는 기술적 해결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기술 내용은 특허의 보호 범위를 한정하는 기능을 한다.

주제는 특허 청구 범위에 포함된 모든 기술적 특징과 특허의 기술적 솔루션의 단순한 이름으로 구성된 기술적 솔루션의 추상적 일반화를 의미합니다. 주제에 의해 일반화된 기술적 해결책은 주장의 모든 기술적 특징에 의해 구체화되어야 한다.

-참고용-

26. "xxx으로 구성된"형식으로 작성된 청구항은 폐쇄 형 청구항이며, 일반적으로 청구 범위에 명시되지 않은 구조 구성 요소 또는 프로세스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제약 분야 및 화학 분야에서의 폐쇄 형 클레임의 조성물은 각각의 특성에 기초하여 공동으로 작용하며, 한약 조성물에 관한 청구항을 제외하고는 다른 물질없이 특정 기술적 효과를 달성 할 수 있다.

27. 설명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이 기술 용어의 의미와 다른 기술 용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경우 설명에 제공된 설명이 적용됩니다.

고소 된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기술 용어가 다른 의미로 부여되는 경우, 이 기술 용어는 특허 출원일에 채택 된 의미로 해석 되어야한다.

28. 특허 문서에서 특허권자가 사용하는 자체 단어는 설명의 특정 의미에 따라 해석 되어야한다. 묘사가 명확한 정의를 제공하지 못하면, 자기 조화 된 단어는 설명의 관련 문맥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본 발명의 목적을 가장 잘 충족하는 의미로 해석 되어야한다. 특허권자가 자기 설명 화 된 단어를 기술에 정의하지 못하고 청구항의 보호 범위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당해 기술 분야의 통상적 인 사기를 가진 사람은 청구에 따라 및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거부 할 것을 결정해야한다.

29. 정상적인 상황에서 특허 문서의 동일한 용어는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상이한 용어는 당해 분야의 통상적 인 사상 자의 기술 및 통상적 인 이해에 따라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결정될 수 없다면 상이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용-

30. 상세한 설명의 도면은 그래프로 서술된 부분을 보충하여, 당업자가 본 발명의 각 기술적 특징 및 기술적 솔루션 또는 실용 신안을 직관적으로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청구항 및 설명을 읽은 후에 당해 기술 분야의 통상적인 사상자에 의해 도면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결정될 수 있는 기술적 내용만이 청구 범위 내의 기술적 특징을 해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도면에서 추측된 내용, 또는 문자 그대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도면으로부터 측정된 크기 또는 관계는 관련 기술적 특징의 내용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31. 참조 부호는 기술적인 해결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 범위가 참조 부호를 언급하는 경우, 청구 범위의 기술적 특징은 참조 부호로 표시된 특정 구조에 의해 정의되어서는 안된다.

32. 특허 청구는 일반적으로 설명 또는 도면에 개시된 실시 예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합리적인 일반화이다. 실시 예는 특허 청구 범위의 보호 범위 내에서의 기술적 해결책의 예에 불과하며, 특허 출원인에 의해 판단되는 바와 같이 본 발명 또는 실용 신안을 달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형태이다. 특허의 보호 범위는 설명서에서 개시된 특정 실시 예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안되나, 다음 경우는 예외이다.

- (1) 청구항은 본질적으로 실시 예에 제시된 기술적 해결책이다.
- (2) 청구항은 기능적 기술적 특징을 포함한다.

33. 초록은 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대중의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특허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거나 청구권을 해석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용-

34. 특허 서류의 오판이 특허의 보호 범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특허 심사 서류에 근거하여 정정 할 수 있다.

청구범위, 설명서 및 도면의 문법, 단어, 구두점, 그래프, 기호 등에 현저한 오류 또는 다른 의미가 존재하나, 청구 범위, 설명 및 도면을 통해 유일한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경우, 상기 유일한 이해를 근거로 결정되어야 한다.

II 발명 및 실용 신안에 대한 특허권 침해 판정

(I) 기술특징의 비교 원칙 및 방법

35. 모든 요소가 규칙을 따른다. 모든 요소 규칙은 기술적 솔루션이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소된 기술솔루션이 특허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에서, 권리자가 주장한 청구에 명시된 모든 기술적 특징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어야 하며 비교가 수행 되어야한다 클레임에 명시된 모든 기술적 특징과 피소 된 기술 솔루션의 모든 해당 기술 특징을 하나씩 차례로 설명합니다. 피소 된 기술적 해결책이 청구 범위의 모든 기술적 특징과 동일하거나 기술적 인 특징을 포함하고있는 경우, 피소 된 기술 해결책이 특허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판단 되어야한다.

36 침해의 결정에 있어서, 당사자가 제공 한 특허 제품은 기소된 기술 솔루션과 직접적으로 비교되어서는 안되지만 특허 제품은 관련 기술 특징 및 기술적 솔루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37. 권리자와 기소된 침해 자 모두가 특허권을 보유한 경우, 특허 된 제품 또는 특허권 주장을 일반적으로 직접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용-

(II) 동일 침해

38. 피고 소인의 기술적 해결책이 청구 범위의 모든 기술적 해결책에 명시된 기술적 특징과 동일한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는 경우 문자 그대로의 침해 즉 문자 적의미의 침해가 발견된다.

39. 청구 범위에 기술된 기술적 특징이 상위 레벨의 특징이고, 기소된 기술 솔루션의 해당 기술적 특징이 저급 수준의 해당 기능인 경우, 기소된 기술 솔루션의 해당 기술특징이 동일한 기술적 기술을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야한다 풍모.

40. 고발된 기술적 해결책이 청구항의 모든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는 것 이외에 새로운 기술적 특징이 추가된 경우, 새로운 기술적 특징이 확실히 특허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여전히 그 특허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

41. 기소된 기술적 해결책은 폐쇄적 주장의 모든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는 것 이외에 새로운 기술적 특징이 추가된 경우, 추가된 기술적 특징이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어야한다. 단, 추가된 기술적 특징이 특허권의 구성 요소에 대한 종단 청구 범위에서 불가피한 통상적인 양의 불순물에 속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2. 기능적 특징을 포함하는 청구항과 관련하여, 지침 19 조에 규정된 구조적 특징과 단계적 특징에 비해, 피소된 기술 솔루션의 구조적 특징과 단계적 특징은 동일한 기능을 달성하고 동일한 수단으로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 또는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단에 의해 동일한 기능을 달성하고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독창적인 노력을

-참고용-

기울이지 않고 특히 출원일에 당해 기술 분야의 통상적 인 사망자가 예상 될 수 있는 경우, 대응하는 구조 및 계단 형상이 기능적 특징과 동일하다는 것이 결정 되어야한다.

구조 및 계단 형상이 동일한 형상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 할 때, 구조 및 계단 형상은 둘 이상의 기술적 특징으로 나누어지기보다는 하나의 기술적 특징으로 간주됩니다.

43. 특허 또는 실용 신안이 나중에 부여 된 발명 또는 실용 신안이 발명 또는 실용 신안에 대한 선행 특허의 개선에 속하는 경우 및 추후 특허 청구가 청구항의 모든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는 경우 선행 특허에는 다른 기술적 특징이 추가되어 있으며, 최신특허는 종속 특허에 속한다. 종속 특허의 이행은 선행 특허의 보호 범위에 속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특허는 종속 특허입니다:

(1) 이전 제품 특허의 클레임의 모든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는 것 이외에, 후기 제품 특허의 클레임은 이에 추가 된 새로운 기술적 특징을 갖습니다.

(2) 원 제품 특허의 청구에 기초하여,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용도가 발견된다.

(3) 원 가공 특허의 청구에 기초하여 새로운 기술적 특징이 추가된다.

(III) 동등한 침해

44. 특허 침해의 결정에 문자 적 침해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동등한 침해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기소된 기술적 해결책이 동등한 침해를 구성 함을 입증하기위한 증거가

-참고용-

충분할 것이며, 권리자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상세한 설명을 해야 한다.

45. 기소된 기술 솔루션은 특허의 보호 범위 내에 속하도록 결정되어야 하며 해당 기술 기능과 문자 적으로 다르지만 기소된 기술 솔루션의 하나 이상의 기술적 특징이 발견 될 때 동등한 침해가 발견 되어야한다. (들)이 후자의 동등한 특징 (들)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등한 특징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달성하고 청구 범위에 기술 된 기술적 특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단에 의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들을 의미하며, 독창적 인 노력을 하지 않고 당업자에 의해 구상 될 수 있다.

동등한 특징에 대한 판단에서, 수단은 기술적 특징 자체의 기술적 내용이며, 기능 및 효과는 기술적 특징의 외부 적 특성이며, 기술적 특징의 기능 및 효과는 기술 수단에 의해 결정된다 특색.

46.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단은 기소된 기술 솔루션의 기술적 특징이 기술적 내용면에서 해당 기술 특징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47.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은 기소된 기술 솔루션의 기술적 특징과 청구 범위의 해당 기술 특징이 각각의 기술적 솔루션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함을 나타냅니다. 피고인 기술 솔루션의 기술적 특징이 청구 범위의 기술적 특징과 비교하여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48.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는 기소된 기술 솔루션의 기술적 특징 및 해당 기술 특징이 각각의 기술 솔루션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술적 효과를 달성 함을 나타냅니다.

-참고용-

49. 독창적 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구상된다는 것은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적 인 사상자를 가진 사람은 피소 된 기술적 해결책의 기술적 특징 및 청구 범위의 해당 기술적 특징이 상호 교체 가능하다는 것을 쉽게 예상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가지 기술적 특징이 동일하거나 가까운 기술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는 판단 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두 가지 기술적 특징이 동일한 작동 원리를 따르는 지 여부 두 가지 기술 특징이 단순한 방식으로 직접 상호 교체가 가능한지 여부, 즉 두 가지 기술적 특징 간의 교체를 위해 다른 부분을 재 디자인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크기와 인터페이스 위치의 단순 조정은 재 디자인.

50. 동등한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수단, 기능 및 효과와 관련하여 판단을 내리고, 수단, 기능 및 효과에 관한 판단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발명의

노력이 연속적으로 요구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51. 동등한 기능을 대체하는 것은 전체 기술 솔루션을 대체하는 대신 특정 및 해당 기술적 기능을 대체해야 합니다.

52. 동등한 특징에 관해서는 피소 된 기술 솔루션의 한 가지 기술 특징에 해당하는 청구의 여러 기술적 특징이거나 피소 된 기술 솔루션의 여러 기술적 기능의 조합에 해당하는 청구의 한 가지 기술적 특징 일 수 있습니다.

53. 동등한 기능의 대체는 청구항의 구별되는 기술적 특징의 대체 및 주장의 전체 부에서 기술적 특징의 대체를 포함한다.

54. 기소된 기술 해결책의 기술적 특징이 청구와 동등한 지의 여부를

-참고용-

결정하기 위한 시점은 기소된 행위가 발생하는 시점에 따라야 한다.

55. 청구항 및 혐의 기술 솔루션에 둘 이상의 동등한 특징이 있는 경우, 둘 이상의 동등한 기능의 집합으로 기소된 기술 솔루션이 청구와 다른 기술적 인 기술적 솔루션을 형성 할 수 있다면, 또는 예기치 않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동등한 침해는 일반적으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56. 기능적 특징을 포함하는 청구항과 관련하여, 지침 19 조에 규정 된 구조적 특징과 단계적 특징과 비교하여 피고의 기술 솔루션의 구조적 특징과 단계적 특징은 동일한 기능을 달성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단에 의해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소송중인 특허 출원일로부터 발명 행위를 하지 않고 기소된 날까지 예술 분야의 통상적인 사상자를 상상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구조 및 단계 특징 기능적 기능과 동일합니다.

구조 및 계단 형상이 등가 형상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 할 때, 구조 및 계단 형상은 하나의 기술적 특징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2 개 이상의 기술적 특징으로 나누어지기 보다는

57. 수치 범위 특징을 포함하는 청구항과 관련하여, 상이한 숫자 특징이 출원일 이후에 나타나는 기술적 내용에 속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이한 숫자 특징이 동등한 특징을 구성한다고 주장하는 권리 소유자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지원되어서는 안된다.

특허 청구 범위가 "적어도" 또는 "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수치 특징을 제한하고 청구항, 설명 및 도면을 읽을 때, 당업자는 특허의 기술적 해결책이 특허 강조한다고 간주한다 특징에 대한이 용어의 엄격한 제한 효과, 다른 수적

-참고용-

특징이 동등한 특징을 구성한다는 권리 보유자의 주장은 지지되지 않는다.

수치 적 특징을 갖는 실용 신안과 관련하여, 고소 된 기술적 해결안의 상응하는 수치범위가 동등한 특징을 구성하는 권리 소유자의 주장은 다른 수치 적 특징이 기술적 내용에 속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원되어서는 안된다 제출일 이후에 출두해야 합니다.

58. 설명이나 도면에만 기술되어 있지만 청구항에 포함되지 않은 기술적 해결책은 특허권자에 의해 포기 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기술 솔루션이 특허의 보호 범위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는 권리 소유자의 주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59. 기소된 기술 솔루션이 설명에 의해 명확히 배제되거나 배경 기술에 명시된 기술솔루션에 속한 기술 솔루션에 속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권리 소유자의 주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60. 발명의 단계 또는 발명의 청구 범위의 보정을 통해 형성된 기술적 특징 또는 실용신안의 청구항의 기술적 특징을 나타내지 않는 기술적 특징과 관련하여, 특허권자가 그 존재를 명확하게 알고 있거나 예측할 수 있다면 대안적인 기술적 특징을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특허 출원을 제출하거나 수정하는 시점에 대안적인 기술적 특징을 기술하고, 동등한 침해로 보호 범위에 대체 기술적 특징을 통합하기위한 권리 보유자의 주장은 침해 결정에서 지원되어서는 안된다.

61. 기소된 기술적 해결책의 기술적 특징이 청구항의 기술적 특징과 동등한 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피소자는 특허권자가 이 동등한 특징을 포기하고, 금반언의 규칙을 지키려고 변호 할 수 있다.

에스토펠 (Estoppel)은 특허 침해 소송에서 동등한 침해가 발견되었는지

-참고용-

여부를 결정할 때 특허권자가 버려진 내용을 특허의 보호 범위에 다시 포함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포기 된 내용은 특허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 출원 또는 무효화 절차에서 제한적으로 주장을 수정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관찰을 통해 포기한 보호 범위입니다.

62. 특허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에 의한 보호 범위의 제한 또는 부분적 포기는 신규성 또는 창의성의 결여, 필수 기술적 특징의 결여, 설명에 의한 청구의 지원 부족 및 불충분 한 공개를 극복하기 위해 요구된다 응용 프로그램을 비 특허 가능하게 만드는 설명입니다.

권리자가 특허 문서를 수정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경우, 수정의 목적은 특허권 취득에 있어서 존재하는 실질적 결함을 극복하기위한 것으로 추정 될 수 있다.

63. 특허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보호 범위 또는 관찰에 대한 제한적 수정은 명시 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서면 진술, 특허 조사 서류 및 유효한 법률 문서에 기록 되어야한다.

권리 보유자가 특허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 출원 및 무효화 절차에서 제기한 청구항, 설명 및 도면 또는 관측에 대한 제한적 수정이 명백히 부인되었음을 입증 할 수 있는 경우, 개정 또는 관측이 기술 솔루션 포기.

64. 에스 토펠은 피고인이 특허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의 금반언에 대한 요청을 제기하고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출한다는 전제하에 적용됩니다.

법원은 특허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의 금반언에 관한 증거가 확보 된 경우, 확인 된 사실과 금반언을 적용하여 청구 범위의 보호 범위를 제한하고

-참고용-

합리적으로 보호 범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허의

III. 디자인 특허 보호 범위의 결정

65. 디자인 특허 침해에 관한 분쟁 사건의 재판에서, 우선 특허의 보호 범위가 결정 되어야한다. 디자인 특허의 보호 범위는 도면이나 사진에 설명된 특허 제품에 포함된 디자인과 디자인의 간략한 설명과 필수 기능 및 무효화 절차에서 특허권자가 제기 한관찰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 소송 절차는 디자인 특허의 보호 범위를 이해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소송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제공 한 실제 특허 제품은 디자인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서가 될 수 있지만 디자인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기위한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66. 전반적인 비교 원리. 디자인의 보호 범위를 결정할 때, 형상, 패턴, 색상 및 기타 디자인 요소는 도면이나 사진에서 이 디자인을 나타내는 광고를 발표 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도면 또는 사진의 각보기에 표시된 모든 디자인 특징을 고려해야 하며 일부는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디자인 기능을 무시하고 다른 기능은 무시합니다.

디자인 특징은 상대적으로 독립적 인 시각적 효과를 가지며 무결성과 식별 가능성을 가진 제품의 모양, 패턴 또는 그 조합 또는 모양 및 / 또는 패턴과 색상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즉, 특정 부분의 디자인 제품.

67. 권리자는 디자인 특허의 본질을 설명하는 서면 자료를 제출하고 디자인의 혁신 부분 및 디자인 내용을 설명 할 수 있다. 간단한 설명에 필수 기능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참조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

필수적인 기능은 디자인을 이전 디자인과 구별하고 일반 소비자에게 눈에 띄는 시각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디자인 기능을 의미합니다.

68. 디자인 특허가 색상의 보호를 요구하는 경우, 보호를 위해 청구된 색상은 디자인 특허의 보호 범위를 결정할 때, 즉 침해의 결정, 모양, 패턴, 색상 및 조합은 피소된 제품의 해당 모양, 패턴, 색상 및 조합과 포괄적으로 비교되어야 한다.

69. 디자인 특허가 색상의 보호를 추구하는 경우, 권리자는 디자인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발행하거나 인정한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의 특허 심사 서류에 기록된 색채와 비교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70. 전체 시각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품의 크기, 재질 및 내부 구조는 디자인 특허의 보호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71. 유사한 디자인에 대한 특허의 보호 범위는 각각 독립적인 디자인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주 디자인 및 다른 유사한 디자인은 각각의 디자인 특허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로 사용될 수 있다.

72 세트 내의 제품의 전체 디자인 및 세트로 된 제품을 구성하는 각각의 디자인이 디자인 특허 문서의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 특허의 보호 범위는 제품을 구성하는 각 제품의 디자인에 의해 결정된다.

73. GUI 디자인의 보호 범위는 디자인 요점을 결합하여 제품의 디자인 도면에 의해 결정된다.

동적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보호 범위는 간략한 설명을 통해

-참고용-

동적 변경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동적 변경 프로세스를 결정할 수 있는 제품 디자인보기에 의해 공동으로 결정됩니다.

IV. 디자인 특허 침해 결정

74. 특허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특허 디자인을 포함하는 제품의 동일 또는 유사한 카테고리의 제품에 통합되는 경우, 피소 된 디자인은 디자인 특허의 보호범위 내에 속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75. 침해의 결정에 있어서, 권리 보유자가 제출 한 특허 된 디자인을 포함하는 실제 제품 대신에, 이 디자인을 대표하는 도면 또는 사진을 기초로 하여 보조금 발표에서 비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진정한 특허 제품은 특허 공표 문서의 그림이나 사진에 표현된 디자인을 포함하는 제품과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곳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76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한 결정은 돋보기, 현미경 및 기타 도구를 통해 비교하는 대신 일반 소비자의 시각에서 직접 관찰하여 비교를 통해 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 도면이나 사진에 표시된 제품 디자인이 특허 출원 시 증폭된다면, 해당 제품은 그에 상응하여 침해 결정을 위한 비교에서 증폭되어야 한다.

77. 디자인 침해의 결정에 있어서, 기소된 제품과 그 디자인을 포함하는 제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주의 제품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시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제품의 범주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제품에 의해 결정됩니다.

-참고용-

78. 제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는 디자인을 통합한 제품의 기능, 사용 목적 및 사용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품의 사용 목적은 디자인의 간략한 설명, 산업 디자인을 위한 국제 분류, 제품의 기능, 제품의 판매 상황 및 실제 사용의 순서로 관련 요소를 참조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등의

사용과 디자인 제품의 사용 조건과 비난 디자인 제품의 사람들의 기능, 목적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디자인 제품과 비난 제품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제품이 아니다.

79. 특허 침해 결정은 동일성 및 유사성에 근거하여야 하며, 상표법의 의미에서 혼란과 실수를 인정하는 것보다

80.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에 대한 판단은 디자인 특징의 포괄적인 관찰과 전반적인 시각 효과에 대한 포괄적인 판단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하나씩 분석하고 비교한 후에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허 디자인의 비주얼 파트의 모든 디자인 특징과 고소된 디자인 및 제품 디자인의 전반적인 시각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은 대개 디자인의 전체적인 시각 효과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1) 다른 부품과 비교하여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직접 관찰하기 쉬운 제품 부분.

(2) 다른 디자인 특징과 비교하여 디자인의 본질적인 특징.

비교에서 디자인과 피고인 제품 간의 디자인 특징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요약은 만들 수 있으며, 전체 유사 효과 또는 차이점이

-참고용-

전체 시각 효과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하나씩 결정하고 궁극적으로 식별은 전반적인 관찰과 포괄적인 판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81.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에 대한 판단은 평범한 디자인자의 관찰 능력보다는 일반 소비자의 지식 및 인지 능력을 가진 판단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 효과의 표준에 따라 결정 되어야한다 디자인 제품 또는 실제 제품 구매자의

82. 정상적인 소비자는 지식과 인지 능력의 관점에서 정의 된 가상의 "사람"을 가리킨다. 정의에서, 디자인 특허의 출원일에 특허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한 카테고리의 제품의 디자인 공간이 고려 되어야한다.

일반 소비자의 지식과 인지 능력은 이전 디자인의 조건에 달려있다. 관련 당사자는 종래 디자인의 조건에 기초하여 일반 소비자의 지식 및 인지 능력을 주장해야 한다.

83.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의 여부를 판단 할 때 관련 당사자는 관련 디자인 특징의 디자인 공간 및 종래 디자인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청 받을 수 있다.

디자인 공간은 특정 제품 디자인을 창안 할 때 디자이너의 자유도를 나타냅니다. 디자인 공간에는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 (1) 제품 또는 부품의 기술적 기능.
- (2)이 범주의 제품의 공통적인 특징을 채택 할 필요성;
- (3) 기존 디자인의 혼잡도;

(4) 경제 요소 (비용 절감) 등과 같이 디자인 공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

-참고용-

특정 디자인 기능이 더 많은 기존 디자인과 일치하면 기능의 디자인 공간이 더 많이 차지할수록 디자인 공간이 작을수록 대체 디자인 솔루션이 줄어들고 미묘한 차이가 전체 시각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효과; 반대로, 이전의 디자인이 적을수록 디자인 공간을 덜 차지할수록 디자인 공간이 넓어질수록 대체 디자인 솔루션이 많아지며 전체적인 시각 효과에 미묘한 차이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종래 디자인 조건은 디자인 특허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대중이 알고있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주의 제품 디자인의 전반적인 조건과 각 디자인 특징의 특정 조건을 지칭한다. 종래 디자인이 디자인 특징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을 갖는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디자인 특징은 제품의 전체 시각 효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84. 피소 된 디자인과 특허 된 디자인은 둘 사이의 전반적인 시각 효과에 차이가 없을 때 동일하게 식별 되어야한다. 둘 사이의 전반적인 시각 효과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을 때도 유사한 것으로 확인 되어야한다. 구체적으로:

(1) 모양, 무늬, 색채 등의 전반적인 시각적 효과와 관련하여 차이가 없을 때 두 가지는 동일하다고 간주한다.

(2) 둘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형상, 패턴, 색채 등의 전반적인 시각적 효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 유사하다고 간주한다.

(3) 두 개는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모양, 패턴, 색 등의 전반적인 시각적 효과와 크게 다르다.

85. 동일성 또는 동일성에 대한 판단에서 제품의 기능에 의해 결정된 디자인

-참고용-

특징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제품 기능에 의해 결정된 디자인 특징은 기능에 의해 제한적으로 또는 유일하게 결정된 디자인 특징을 말하며 심미적 요인에 관계없이 형성됩니다. 기술 표준에 명시되거나 기계적 교합 관계를 달성하기 위해 채택되어야 하는 선택 불가능한 디자인 특징은 기능 디자인 기능입니다.

86. 정적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과 관련하여, 제품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을 고려하고 위치, 비례 및 배급 관계와 같은 관계를 고려하여 포괄적 인 판단을 해야 한다 제품의 일부, 고소 된 디자인의 해당 콘텐츠는 물론 피소 된 제품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특허 받은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제품의 나머지 부분과의 관계가 전체적인 시각 효과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디자인이 특허의 보호 범위.

고소 된 디자인이 정적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전체를 포함하는 경우, 이는 특허의 보호 범위 내에 속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87. 동적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디자인과 동적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피고인의 디자인은 특허의 보호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특정 판단에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과 제품의 나머지 부분의 위치, 크기 및 분포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고소 된 디자인이 특허 디자인에 부합하는 변경 프로세스가 반영 될 수 없는 일부 주정부의 견해가 부족한 경우, 특허와 일치하는 변경 프로세스가 아닌 한 피고인의 디자인이 특허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디자인은

-참고용-

여전히 고유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피소 된 디자인이 동적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또는 키 프레임의 일부를 사용하고 파트 또는 키 프레임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필수 기능에 속하는 경우 피고인의 디자인은 특허의 보호 범위 내에 속하며, 고소 된 디자인의 전반적인 시각 효과가 동적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는다.

88. 3 차원 제품 디자인과 관련하여, 모양은 일반적으로 전체 시각 효과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동일성 또는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모양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모양이 일반적인 디자인에 속하면 패턴과 색상이 전체 시각 효과에 더 많은 영향을 줍니다.

비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디자인 특징이 일반적인 디자인 일 때,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전반적인 시각 효과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보통의 디자인은 일반 소비자에게 친숙한 이전 디자인을 지칭하며, 그 이름의 언급은 그 특별한 디자인을 상기시킨다. 디자인 제품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각 독립 제품 제조업체가 채택한 디자인 기능이 일반적인 디자인에 속합니다. 통상적인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독특한 시각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디자인 특허의 전반적인 시각 효과에 주목할 만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89. 평면 제품의 디자인과 관련하여, 패턴과 컬러는 일반적으로 전체 시각 효과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동일성 또는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패턴과 컬러에 집중해야 한다.

-참고용-

90. 색상의 보호를 주장하는 디자인과 관련하여, 디자인이 일반적인 디자인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이 먼저 내려져야 하고, 일반적인 디자인의 경우 패턴과 색상만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어디 모양, 패턴 및 색상은 모두 새로운 디자인이며 모양, 패턴 및 색상의 조합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91. 투명성 재료 또는 불투명 재료 용 투명 재료의 불투명 재료 대체는 재료 특성의 변환일 뿐 제품 디자인에 명백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동일성 또는 유사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투명한 재질로 인해 제품 디자인의 미감이 변화되어 이 제품과 관련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전반적인 시각 효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려되어야 한다.

고소된 제품이 제품의 내부 형상, 패턴 및 색상을 관찰 할 수 있는 투명 재료 용 불투명 재료의 교체에 관여하는 경우, 내부 형상, 패턴 및 색상은 제품 디자인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92. 가변 국가의 제품에 대한 디자인 특허와 관련하여, 다양한 가변 국가의 견해가 모두 보호 범위에 통합 되어야한다. 피소 된 디자인이 가변 국가 견해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사용중인 각 국가의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피고인 된 디자인이 특허의 보호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소된 디자인이 사용중인 일부 국가의 디자인이 결여되어 있고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경우, 기소된 디자인이 특허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되어야한다.

참조보기는 일반적으로 디자인을 통합 한 제품의 사용 목적, 사용 방법 또는

-참고용-

사용 장소 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다양한 국가의 제품에 대한 디자인 특허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93. 관련된 특허가 유사한 디자인이거나 둘 이상의 독립적인 디자인을 포함하는 세트 또는 유사한 제품의 디자인인 경우, 권리자는 이에 의해 주장된 디자인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디자인이 올바른 근거로 주장되는 경우, 피소된 제품의 관련 디자인 내용은 각각의 디자인과와 각각 별도로 비교되어야 한다.

피소된 디자인이 유사한 디자인의 하나의 디자인 또는 세트의 제품의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피고인된 디자인이 특허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94. 하나의 조립 옵션만 있는 조립 제품의 디자인 특허와 관련하여, 피소된 디자인이 조립된 상태에서 조립된 제품의 전체 디자인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피소된 디자인이 특허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조립품이 불필요한 조립 제품의 디자인 특허 또는 구성 부품의 조립 옵션이 둘 이상인 경우, 피소된 디자인이 모든 개별 구성 요소의 디자인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기소된 디자인은 특허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 기소된 디자인이 일부 개별 구성 요소의 디자인이 결여되거나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지 않은 경우, 기소된 디자인이 특허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개별 구성 요소의 디자인이 모든 개별구성 요소의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 효과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참고용-

95. 특허권자와 기소된 침해 자의 디자인 특허 출원이 승인되고 특허권자의 디자인 특허 출원일이 피고 소인의 디자인 특허의 출원일보다 앞선 경우,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고소 된 침해 자의 디자인과 특허권자의 디자인 간에 식별 된 경우, 디자인 특허를 이용하여 기소된 침해 자의 행위가 이전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 한 것으로 판단 될 수 있다.

96. 최종 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권리자가 주장한 디자인이 PRB에 의해 무효로 선언된다면, 지침 9 조와 10 조를 참조하여 처리 할 수 있다.

V. 특허 침해 행위의 판정

(I) 직접적인 특허 침해 행위의 결정

97. 발명 또는 실용 신안에 대한 특허 부여 후, 특허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법인 또는 개인은 특허권자의 허가없이 그의 특허를 실시하면 안된다. 즉, 비즈니스 목적으로 특허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제안, 판매 또는 수입과, 또는 특허 방법을 사용 및 해당 특허방법에 의해 직접 취득한 제품에 대하여 사용, 판매 제안, 판매 또는 수입해서는 안된다.

디자인에 대한 특허 부여 후, 특허권자의 허가없이, 어떤 주체 또는 개인도 특허를 이용하여, 즉 자신의 특허 디자인을 통합 한 제품을 생산, 판매, 판매 또는 수입 할 수 없습니다 또는 사업 목적.

98. 발명품의 공개일 이전의 착취 행위 또는 실용 신안 또는 디자인에 대한 특허 부여 발표일은 특허 침해 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발명 특허 공개로부터 특허 부여 발표까지, 즉 발명 특허의 잠정적 인 보호 기간 동안, 발명을 사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권리 보유자에게 착취하기 위해

-참고용-

적절한 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 착취 행위에 대한 결정은 특허 침해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출원일에 출원인이 요구 한 보호 범위가 특허 허가 발표와 관련하여 특허의 보호 범위와 일치하지 않고 기소된 기술적 해결책이 두 가지 보호 범위 내에 있는 경우, 피고인 이 잠정적 보호 기간에 발명을 착취 한 것으로 간주된다. 기소된 기술 솔루션이 보호범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소된 침해자는 잠정적 보호 기간에 발명을 착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99.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 제품을 만드는 것은 제품의 양과 품질이 제조 행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서 청구 범위에 언급 된 제품의 기술적 해결책이 구현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음 행위는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 제품을 제조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1) 공정에 의해 정의 된 제품의 주장을 제외하고, 다른 제조 공정에 의해 제품을 제조하는 행위.

(2) 특허 제품에 부품을 조립하는 행위.

100. 디자인 특허 제품의 제작은 심의회의 특허 행정 부서에 특허 출원을 할 때 특허권자가 제출 한 그림 또는 사진에 기술 된 특허 디자인을 통합 한 제품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01.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 제품의 사용은 청구항에 기술 된 제품의 기술적 해결책의 기술적 기능의 적용 또는 효과의 실현을 의미한다.

102. 다른 제품을 만들기 위해 구성 요소 또는 중간 제품으로 발명 또는 실용 신안에 대한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의 사용은 특허 제품의 사용에 속하는

-참고용-

것으로 간주됩니다.

103. 특허 된 공정의 사용은 청구항에 기술 된 특허 된 공정의 기술적 해결책의 각 단계가 수행되고, 이 공정의 사용 결과가 그것이 특허 침해를 구성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04. 디자인 특허 제품의 사용은 디자인을 통합 한 제품의 기능 및 기술적 성능의 적용을 의미한다.

105.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의 판매 계약이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그 법은 특허를 침해 한 제품의 판매를 구성하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제품의 소유권 양도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는 판매가 구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장 된 형태의 상업적 이익을 얻기 위한 약정 또는 다른 수단을 동원하여 특허권을 침해 한 제품의 소유권 양도 역시 제품 판매에 속합니다. 생산이나 사업 목적으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106. 발명 또는 실용 신안을 침해 한 제품이 다른 제품을 만들기위한 구성 요소 또는 중간 제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다른 제품의 판매는 중간 제품의 물리 화학적 성질이 아닌 한 특허 제품의 판매로 간주됩니다 제조 중에 실질적으로 변경된다.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을 다른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기위한 구성 요소로 사용하는 행위는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이 다른 제품에서 기술적 기능 만 갖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 디자인을 포함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참고용-

기술적 기능 만 있으면 이 구성 요소가 궁극의 제품의 내부 구조를 구성하며 궁극의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 시각적 인 효과를 내지 않고 기술적 기능과 효과 만 나타냅니다.

107.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피소 된 침해 자의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의사 표시는 판매 제안을 구성한다.

광고로 제작 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의사 표시는 쇼핑 창, 온라인 전시 또는 전시회에서의 전시 등으로 판매 제안으로 간주됩니다.

108.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사용은 특허 제품의 판매로 간주된다.

109. 특허 제품의 수입이란 제품 특허 청구 범위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 제품 또는 특허 출원 된 공정에 의해 직접 입수 한 제품 또는 해외의 특허 디자인을 통합 한 제품을 우주에서 운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내 영토로 국경.

110. 제품에 대한 공정 특허의 연장은 공정 발명에 대한 특허 부여 후, 기업이나 개인이 특허권자의 허가없이 직접적으로 얻은 제품을 사용, 판매, 판매 또는 수입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산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특허 프로세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외에도 생산 또는 비즈니스 목적의 특허 프로세스.

111. 특허 된 공정에 의해 직접 얻어지는 제품은 원료 및 제품의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공정 특허의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모든 단계 특징에 따라 원재료 및 제품을 가공하여 얻은 원 제품을 의미한다. 구조 또는

-참고용-

물리 화학적 특성.

상기의 오리지널 제품, 즉 직접 성분 또는 원재료로 사용되는 오리지널 제품을 가공하여 제조된 후속 제품은 이 특허 공법을 사용하여 직접 얻은 제품으로 간주한다. 이 후속 제품의 추가 처리는 이 특허 프로세스에서 직접 얻은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112. 특허법 제 61 조에 규정된 "신제품"은 국내외 최초로 제조된 제품을 말하며, 이 제품은 출원일 이전에 동종의 제품과 비교하여 제품 구성 요소, 구조 또는 품질, 성능 및 기능면에서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제품 또는 기술 솔루션이 특허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에 알려지면 이 제품은 특허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신제품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리자는 신제품을 결정하는 증거의 부담을 져야 한다. 권리자가 특허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 제품을 신제품으로 사전에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권리자는 증명 책임을 수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13. 특허법 제 61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 제품"이란 피소된 제품과 그 신제품의 제조 방법을 이용하여 직접 얻은 원래의 제품이 그 형상, 구조 및 형태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품 등 권리자는 그것이 동일한 제품인지 여부를 입증할 의무가 있다.

114. 사용 발명 특허와 관련하여 권리자는 피고인이 특허 사용의 목적으로 기소된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판매 또는 수입을 제공함을 입증해야 한다.

115. 특허권자의 허가없이 과학적 연구 및 실험을 하는 동안, 관련 특허

-참고용-

제품의 제조, 사용, 수입 또는 특허 기술을 도구, 수단 등으로 사용하여 다른 기술의 연구 실험을 수행하고, 또는 특허 기술 솔루션 등을 이용하는 사업 전망에 관한 연구는 특허 기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결과로 특허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II) 공동 특허 침해 행위의 결정

116. 음모 또는 노동 분담과 둘 이상의 당사자 간의 협력에 의한 특허 침해 행위의 시행은 공동 침해를 구성한다.

117. 특허법 제 11 조에 규정 된 바와 같이 다른 당사자의 행위가 특허 침해를 구성한 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있는 위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제품을 제조하거나 제품에 "감독"을 표시하거나 유사한 참여 행위를 포함하도록 위임한다. 위탁자와 위탁자의 행위가 공동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118. 타인의 행위가 특허법 제 11 조에 규정 된 특허 침해를 구성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있는 사람, 특허 침해 행위를 저지른 다른 당사자를 구제하거나 지원하며, 다른 당사자와의 공동 침해 자이며, 양 당사자는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책임을 진다.

119. 생산자 또는 사업 목적을 위해 특허권자의 허가없이 특정 제품이 원재료, 중간 제품, 구성품 또는 특허가 기술적 해결책을 구현하기 위해 특별히 사용 된 장비임을 명확하게 알고있는 당사자는 상기 제품을 특허 침해 행위를 한 다른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별 사용 제품을 제공하는 당사자의 행위는 지침 제 118 조에 규정 된 바와 같이 특허 침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다른 당사자를 돕는 행위를 구성하지만, 타방 당사자가 지침 제 130 조 또는 특허법

-참고용-

제 69 조 제 3 항, 제 4 항, 제 5 항에 규정 된 사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민사상의 책임을 진다.

전 단락에서 언급 된 "특수하게 사용 된 제품"은 재료, 제품 등이 특허의 기술적 해법을 이행하는데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며 실질적으로 비 침해적인 사용을 하는지, 해당재료, 제품 등이 소송중인 특허의 기술적 해법을 이행하는데 없어서는 안되며 소송중인 특허에 사용 된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다른 비 침해적인 용도를 가지지 않는 한 그 재료, 제품 등은 "일반적으로"특별히 사용됩니다.

특정 제품이 " 다른 당사자에 의한 특허 침해 사실의 실제 발생과 함께, 행위자 유인행위는 지침 제 118 조에 규정 된 바와 같이 특허 침해 행위를 저지른 다른 당사자를 도발하는 행위를 구성한다.

122. 기술 할당 / 면허 계약의 양수인 / 면허 소지자가 지정 / 허가되고 계약에서 합의 된 대로 기술을 이용하고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 양수인 / 면허 인은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양도인 / 라이선스가 정당한 기술을 알고있어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기술을 양도 / 양도인 / 면허 인의 양도 /면허 행위는 지침 제 118 조에 규정 된 바와 같이 특허 침해 행위를 저지른 다른 당사자를 도살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VI. 특허 침해 항변

123. 피고인의 변론 근거는 일반적으로 법원의 논의가 끝나기 전에 관련 지원을 제공해야한다.

피고인이 2 심에서 항변의 근거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항변의 근거를 세우고

-참고용-

그러한 근거가 2 심의 법원에 의해 수락되어 비 침해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당사자는 공식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상대방은 변호사 비용, 여행 경비 및 관련 비용.

(I) 특허의 유효성에 근거한 항변

124. 피소 당사자가 소송중인 특허가 유효하지 않거나 만료되었거나 무효화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입증하는 경우, 법원은 소송을 기각 할 수 있다.

125.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피고 당사자가 특허가 교부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무효화되는 이유로 변호하는 경우 PRB에 무효 청구를 제기해야 한다.

(II) 특허권 남용에 근거한 항변

126. 피고인이 증거를 제공하고 특허권자가 그 특허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할 수 있다.

특허 침해에 대한 법적 소송 중에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 특허권 남용에 대한 결정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127.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하는 것은 특허권을 부여해서는 안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있는 발명품창작을 위한 특허 출원 및 최종적으로 특허권을 얻는 것을 말한다. 불법적인 특허 획득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합니다:

(1) 특허 날짜를 기입하기 전에 명확히 알고있는 국가 표준, 산업 표준 등과 같은 기술 표준의 기술적 해법에 대한 출원 및 취득.

(2) 국가 표준, 산업 표준 등과 같은 기술 표준을 초안하고 설정 한 참가자가 분명히 배운 다른 기술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특허 출원 및 획득.

-참고용-

(3) 특정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제조되고 사용된다는 것을 신청자가 알고있는 제품에 대한 특허 출원 및 취득;

(4) 실험데이터, 기술적 효과 및 특허법의 특허 성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고 특허를 얻는 다른 수단을 제조하는 것.

(5) 해외에 공개 된 특허 또는 특허 출원에 기술 된 기술적 해결책에 대한 출원 및 취득.

(III) 비 침해에 근거한 항변

128. 청구 범위에 기술 된 모든 기술적 특징과 비교할 때, 피소 된 기술적 솔루션의 기술적 특징 중 하나 이상의 기술적 특징이 부족할 경우, 피소 된 기술 솔루션은 특허 침해를 구성한다.

129. 기소된 기술 솔루션의 기술적 특징과 청구 범위에 명시된 모든 기술적 기능의 비교에서 두 기술 솔루션의 하나 이상의 기술적 특징이 동일하거나 동등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소된 기술 솔루션은 특허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은 동일하거나 동등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1)이 기술적 특징은 기소된 기술 솔루션이 새로운 기술적 솔루션을 구성 할 수 있게 해준다.

(2)이 기술적 특징은 기능 및 효과와 관련하여 청구 범위에서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보다 분명히 우월하며, 당해 기술 분야의 통상적 인 기술자는 명백한 대신 상당한 개선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피소 된 기술적 해결책이 청구항의 개별 기술적 특징을 생략하거나,

-참고용-

청구항의 해당 기술적 특징을 보다 단순하거나 열등한 기술적 특징으로 대체하고 이에 상응하는 청구의 수행 또는 효과를 포기하거나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기술적인 특성을 가지며, 따라서 열등한 기술 솔루션이 된다.

130. 다른 사람의 특허를 생산 또는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특허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IV)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 항변

131. 특허제품 또는 특허방법에 의해 직접 취득한 제품은 특허권자 또는 그가 허가한 업체 또는 개인에 의해 판매 된 후, 상기 제품에 대한 사용, 판매 제안, 판매, 수입하는 것은 특허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하 경우를 포함한다.

(1) 특허권자 또는 라이선스 허가 받은 자가 중국 국내에서 자신의 특허 제품 또는 특허방법에 의해 직접 취득한 제품을 판매한 후, 구매자가 중국 국내에서 특허제품을 사용, 판매제안, 판매하는 경우.

(2) 특허권자 또는 라이선스 허가 받은 자가 중국 국외에서 자신의 특허 제품 또는 특허방법에 의해 직접 취득한 제품을 판매한 후, 구매자가 상기 제품을 중국 국내로 수입하여 중국 국내에서 상기 제품을 사용, 판매제안, 판매하는 경우.

(3) 특허권자 또는 라이선스 허가 받은 자가 특허 제품의 전용 부재를 판매한 후에, 상기 부품을 사용, 판매제안, 판매하거나 상기 부재를 조립하여 특허 제품을 제조하는 사용할 경우.

(4) 방법특허의 특허권자 또는 라이선스 허가 받은 자가 방법특허를

-참고용-

실시하기 위한 설비를 판매 한 후, 상기 설비를 이용하여 방법특허를 실시하는 경우.

132. 동일한 제품이 제조된 경우 동일한 공정이 사용되었거나 특허 출원일 이전에 제조 또는 사용을 위해 필요한 준비가 되어 있으며 원산지 내에서의 제조 또는 사용이 계속 수행된다. 그러한 행위는 특허권의 침해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위에서 언급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특허 제품 또는 특허 과정에서 직접 입수한 제품의 사용, 판매 또는 판매는 특허권의 침해로 간주되지 않으며, 어느 한 쪽.

133. 사전 사용권을 향유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제작 또는 사용에 필요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한다. 즉, 발명의 개발에 필수적인 주요 기술도면 또는 프로세스 파일이 완성되었거나 발명 창작에 필수적인 주요 장비 또는 원자재가 제작 또는 구매되었습니다.

(2) 제작 또는 사용은 원래 범위 내에서만 계속됩니다. "원래의 범위"는 특허 출원일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생산 규모 또는 사용 가능한 생산장비를 기준으로 하거나 도달 할 수 있는 생산 규모를 포함합니다. 원래의 범위를 넘어서는 제작 또는 사용은 특허권의 침해로 간주됩니다.

(3) 사전 제작 된 제품 또는 이전에 사용 된 공정 또는 디자인은 사전 권리자의 독점적 인 조사에 의해 성취되었거나 특허권자 또는 기타 독립적 인 연구원 및 성취 자료부터 합법적 수단에 의해 획득 된 것이어야 하며 표절, 도둑질 또는 기타 불공정 한 수단. 불법적으로 획득 한 기술이나 디자인에 대한

-참고용-

사전 사용권을 근거로 기소된 침해 자의 항변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4) 사전 권리 보유자는 이전에 착취 한 기술을 제휴와 함께 이전하지 않는 한 이전할 수 없습니다. 즉, 권리 이전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는 특허 출원일 이후에 착취를 위해 착취하거나 준비한 기술 또는 디자인, 착취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는 기술 또는 디자인, 피고인이 그러한 착취가 원래의 범위 내에서 착취의 계속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기술 또는 디자인이 원래 기업과 함께 양도되거나 상속 된 경우 그러한 주장은 지지되지 아니한다.

134. 운송 수단의 필요성으로부터 중국의 영토, 영해 또는 영토를 일시적으로 통과하는 외국의 운송 수단 인 운송 수단의 장비 또는 장치에서의 관련 특허의 착취는 그 자체를 의미한다. 그것이 속한 국가와 중국간에 체결 된 조약 또는 양국이 가입 한 국제 조약을 준수하거나 상호 이익 원칙에 의거하여 특허권을 침해 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하나, 경계선을 일시적으로 횡단하는 것은 운송수단, 즉 한 운송 수단에서 다른 운송 수단으로 이전하는 행위에 의한 특허 제품의 "환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135. 과학적 연구 및 실험 목적으로 만이 특허를 사용하는 것은 특허권을 침해 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과학적 연구 및 실험의 목적은 과학적 연구 및 실험이 전적으로 특허 기술 솔루션에서 수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목적은 타사의 특허 기술을 연구, 검증 및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 성과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전 특허 기술. 현행 첫 번째 문단에서 규정 된 관련 특허를 사용하는 것은 특허 된 제품의 제조, 사용 및 수입 행위와 특허 된 공정을 사용하는 실험자 및

-참고용-

실험자 자신의 행위 및 관련 특허를 만들고 수입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연구원 및 실험자를 위한 제품.

136. 행정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제공되는 목적으로 특허 의약품 또는 특허 받은 의료 기기를 제조, 수입 또는 사용하는 것과 특별히 이를 위한 특허 의약품 또는 특허 받은 의료 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것은 특허권의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행정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중국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중국인민공화국 양품관리 실시조례>> 및 <<약품등록 관리방법>> 등 관련 양품관리 법률법규, 부처에서 규정한 제도 등에서 규정된 실험자료, 연구보고, 과학문헌 등 관련자료를 지칭하는 것이다.

(V) 종래기술 항변 및 종래 디자인 항변

137. 종래기술 항변은 특허권 보호범위에 속한 전부 기술특징이 종래기술방안 중에 대응되는 기술특징과 동일 또는 동등할 경우, 또는 기소된 기술방안은 종래기술과 본 기술분야의 주지기술로 간단한 조합된 것으로 본 기술분야의 통상적 기술자에 의해 인식될 경우, 피소된 침해자가 이행하는 기술은 종래기술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고소 된 침해 자의 행위는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지칭하는 것이다.

138. 종래기술은 출원일 이전에 대중에게 공개되고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는 기술 및 다른 사람의 특허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포함하여 중국 내외에서 대중이 알고있는 기술 공개 도메인 및 특허권자가 소유한 선행특허 기술에 진입하지 않아야 한다. 하나, 특허법 제 24 조에 따라 신규성 유예 기간을 누리는 기술을

-참고용-

종래기술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139. 종래 디자인에 기초한 항변은 기소된 디자인이 종래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또는 기소된 제품이 포함하는 디자인이 종래 디자인과 제품의 일반적인 디자인의 단순한 결합인 경우, 기소된 디자인은 선행 디자인을 구성하며, 기소된 침해자의 행위는 디자인에 대한 특허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140. 종래 디자인 라 함은 출원일 이전에 대중에게 공개된 디자인을 포함하여 중국 또는 해외에서 대중이 알고있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141 2008 년 개정된 특허법이 발효되기 전에 특허법의 조항에 따라 출원되고 허여된 특허와 관련하여 종래기술 또는 종래 디자인은 이전의 특허법 조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142. 상충되는 출원은 종래기술 또는 종래 디자인에 속하지 않으며 종래기술 또는 종래 디자인에 기초한 항변을 위한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 피소자가 기술적 인 해법이나 상충되는 신청의 디자인을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지침의 조항 137 또는 139를 참조하여 처리 할 수 있습니다.

143. 종래기술에 기초한 항변이가 수락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종래기술의 기술적 특징과 피소된 제품의 기술적 특징을 비교하여 기술 특징이 동일하거나 동등한 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144. 종래 디자인에 근거한 항변이가 수락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이전의 디자인은 그들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소된 디자인과 비교되어야 하며, 이전의 디자인은 소송중인 특허와 비교되어서는

-참고용-

안된다. 그러나, 기소된 디자인이 특허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기소된 디자인과 선행 디자인 사이에 약간의 시각적 차이가 있으며, 디자인 특허의 본질적인 특징이 기소된 디자인에 사용된다면, 종래 디자인은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항변이가 성립될 수 있다.

(VI) 합법적인 원천에 근거한 항변

145. 생산 또는 사업 목적으로 특허 제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은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제품이 생산되고 판매되었음을 알지 못했을 때 제품이 합법적인 출처에서 입수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만 권리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침해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는 사용을 중지 할 법적 책임을 져야한 다는 조건하에 보상 책임을 부담해야합니다.

146. "합법적 출처"는 합법적인 비즈니스 채널, 정규 판매 계약 및 기타 합법적인 비즈니스 모드를 통해 침해 제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당한 출처와 관련하여, 피소 된 제품의 사용자, 피고인이 정당한 출처를 인정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피고용인을 판매 또는 판매하는 당사자는 거래 관행에 따라 관련 증거를 제공해야한다.

(VII) 침해 정지를 이행하지 않는 항변

147. 침해 제품이 사용되고 사용자가 특허권자의 허가없이 그러한 제품이 제조되고 판매됨을 알지 못하고 모르는 경우, 그러한 제품의 합법적 출처가 증명되고 피고인이 합리적으로 검토 한 사실이 입증 된 경우, 인민 법원은 침해 제품의 전술 한 사용을 중단 한 권리 보유자의 소송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참고용-

148. 기소된 활동이 특허 침해를 구성하지만 해당 기소된 활동의 중단이 국가 또는 공공 이익에 해를 끼치는 경우 인민 법원은 기소된 침해자가 기소된 특허 침해 행위를 중단하기보다는 합당한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명령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은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간주 될 수 있다.

- (1) 중국의 정치, 경제, 군사 및 기타 안보에 해롭다.
- (2) 공공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다.
- (3) 공중 보건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 (4) 심각한 환경 보호 오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 (5) 사회 자원의 심각한 낭비와 같은 다른 이해 관계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른 상황.

149. 권장 국가, 산업 또는 지역 표준에 명시 적으로 기술 된 표준 필수 특허의 경우, 특허권자가 의도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 인"조건에 대한 라이선스 의무를 위반 한 경우 특허권자와 피고인이 특허 라이선스 조건에 대해 협상하여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혐의자가 협상에 명백한 결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권리 보유자의 권리 침해 주장을 지지하지않을 것입니다. 표준을 구현하는 행위 표준이 권장되는 국가, 산업 또는 지역 표준이 아니지만 국제 표준 또는 다른 표준 설정 기관에 의해 만들어진 표준에 속하는 경우, 특허권자가 명시 적으로 특허를 공개하고 표준 설정기구의 정책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 차별적 인 약속을 하는 경우 위 조항을 참조 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

"명시 적"약속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표준 설정 조직 및 업계 관행의 정책 및 규정에 따라야합니다.

표준 필수 특허는 기술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사용해야하는 발명을 주장하는 특허입니다.

150. 표준 필수 특허의 라이선스 협상에서 협상 당사자는 성실해야 한다.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 차별적 인 조건의 약정을 하는 특허권자는 진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 차별적 인 조건으로 특허권자에게 라이선스를 요청한 피고인은 또한 선의로 부지런히 협상해야 한다.

151. 특허권자는 표준제정에서 약속한 공정, 합리, 무차별한 허가조항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 입증 책임을 진다. 특허권자는 이하 증거를 제출하여 증명한다.

(1) 라이선스 및 특허 정보 공개문서 관련 표준 설정 기관에 특허권자가 제출 한 것.

(2) 관련 표준 설정기구의 특허정책

(3) 특허권자가 밝힌 허가약속.

152. 특허권자가 공평, 합리 무차별한 라이선스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했음을 입증 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피소견인이 면허 협상에 명백한 결함이 없는 경우 피고인이 적시에 로열티를 제공하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특허권자의 침해 중지 요청을 거부해야 한다.

이하 경우는 특허권자가 고의적으로 공평, 합리, 무차별한 라이선스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참고용-

(1) 침해 사실을 기소된 침해자에게 서면 형태로 통지되어 있지 않으며, 특허권리의 침해범위 및 상세한 침해방식에 대하여 나열 되지 않았을 경우;

(2) 피고용인이 라이선스 협상을 수락한다는 의지를 명시 적으로 표명 한 후에 비즈니스 관행 및 거래 관행에 의해 기소된 침해자에게 서면 형태로 특허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상세한 라이선스 조건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3) 기소된 침해자에게 비즈니스 관행 및 거래 관습에 맞는 답변 기한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4) 협상 중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협상을 방해하거나 중단시키는 경우;

(5) 협상 중에 명백하게 불합리한 조건을 제안하여 사용권 계약이 달성되지 못할 경우;

(6) 특허권자는 협상에서 다른 중대한 결함이 있다.

153. 특허권자가 박람회에 대한 라이선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합리적이고 무차별적인 조건으로 피고인이 협상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우 인민 법원은 당사자 간 결함 정도를 분석 한 후 표준 필수 특허의 침해 중지 요청이 지원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어떤 당사자가 협상 붕괴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저질러 진 경우, 피고인은 필요한 특허 라이선스 협의 과정에서 명백한 잘못을 발견 할 수 있습니다.

(1) 특허권자로부터 침해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 받은 후 적절한 시간 내에 적극적으로 답변하지 않는 경우.

(2) 특허권자로부터 특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받은 후,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참고용-

조건을 수락할지 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적극적으로 답변하지 않았거나 특허권자로부터 제안 받은 특정조건을 거절하나 새로운 조건을 제안하지 않을 경우;

(3) 적절한 이유없이 라이선스 협상을 방해, 지연 또는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4) 협상 중에 명백한 불합리적 조건을 제안하여 사용권 계약이 달성되지 못하는 경우;

(5) 피고인이 협상에 기타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원문 출처



저작권. 2017 chinacourt.org에 의해 모든 권리 소유

영문판 웹주소: <http://bjgy.chinacourt.org/article/detail/2017/04/id/2825592.shtml>

일문판 웹주소: <http://bjgy.chinacourt.org/article/detail/2017/04/id/2825609.shtml>

중문판 웹주소: <http://bjgy.chinacourt.org/article/detail/2017/04/id/2820737.shtml>

한국어 번역판은 개인 번역으로 제공되며, 업무 참고용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사지 마세요.